◉ 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4서식]

교습비 게시표

□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 등

교습과목	월 총 교습시간(분)	분당 수강료	시간당 수강료	교습비 (A)	기타경비(B)							교습비등 총 합계 (C=A+B)
					모의고사비	재료비	급식비	기숙사비	피복비	차량비	소계	
초등수학1	148 × 3 × 4 = 1776	157.658	9459.459	280,000	-	-	-	-	-	-	-	280,000
초등수학2	147 × 5 × 4 = 2940	158.503	9510.204	466,000	-	-	-	-	-	-	-	466,000
초등수학3	147 × 4 × 4 = 2368	157.517	9451.014	373,000								373,000
중등수학1	164 × 2 × 4 = 1312	201.220	12073.171	264,000	-	-	-	-	-	-	-	264,000
중등수학2	137 × 3 × 4 = 1644	200.730	12043.796	330,000	-	-	-	-	-	-	-	330,000
중등수학3	137 × 4 × 4 = 2192	200.730	12043.796	440,000	-	-	-	-	-	-	-	440,000
중등수학4	137 × 5 × 4 = 2740	200.730	12043.796	550,000	-	-	-	-	-	-	-	550,000
고등수학	125 × 3 × 4 = 1500	220.000	13200.000	330,000	-	-	-	-	-	-	-	330,000

『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 제6조 제1항,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,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(신고) 및 변경 등록(신고) 합니다.

2026 년 7 월 16 일

리매쓰수학학원 설립 · 운영자 신 주 리 (서명 또는 인)